## 연봉제규정

제정	1999.04.27	개정	2011.06.21	개정	2017.12.28
개정	2002.05.08	개정	2011.12.28	개정	2018.08.22
개정	2002.12.24	개정	2012.12.31	개정	2018.12.20
개정	2003.12.11	개정	2013.12.27	개정	2019.12.27
개정	2004.12.09	개정	2014.12.23	개정	2020.12.24
	2005.12.28	개정	2015.12.18	개정	2021.12.24
개정	2006.12.18	개정	2016.05.26	개정	2022.08.30
개정	2007.12.27	개정	2016.10.27	개정	2022.12.29
개정	2008.12.29	개정	2016.12.21	개정	2023.12.28
개정	2009.12.30	개정	2017.07.27		

[인사노무처 급여복지부 042-600-8167]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한국가스기술공사의 임금제도 적용에 있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과는 별도로 개인의 능력·실적 및 공헌도 등의 평가에 의하여 1년 단위로 연간 임금액을 결정, 지급함으로서 조직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연봉제 보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2급 이상으로 한다.

② 3급 직원이 2급 이상의 직위에 보임된 경우에는 그 직급에 불구하고 이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기본연봉은 이 규정 제11조를 준용하여 결정한다.<신설 2011.06.21> <개정 2018.08.22>

#### 제 2 장 운 영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기본연봉이라 함은 연봉산정에 기초가 되는 보수를 말한다.<개정 2011.06.21>
- 2. 직무연봉이라 함은 수행직무를 고려하여 지급되는 보수를 말한다.<개정 2011.06.21>
- 3. 성과연봉이라 함은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보수를 말한다.<개정 2011.06.21>
- 4. 연봉이라 함은 기본연봉, 직무연봉, 성과연봉, 기타수당을 합한 보수를 말한다.<개정 2011.06.21>
- 5. 기타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 등을 말한다.<개정 2002.05.08.,2011.06.21., 2022.08.30>
- 6. 월기본연봉이라 함은 기본연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7. 관리부서라 함은 급여관리부서를 말한다.

제4조(보수체계)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연봉제 보수체계는 다음과 같다.

- 1. 연 봉
- 가. 기본연봉<개정 2011.06.21>
- 나. 직무연봉<개정 2011.06.21>
- 다. 성과연봉<개정 2011.06.21>
- 라. 기타수당<개정 2011.06.21.>

- 제5조(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연봉제 적용에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아래 각호와 같이 정의한다.
  - 1. 통상임금은 연봉 중 기본연봉, 직무연봉, 일반성과급, 내부평가급 최저지급률, 직무가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2.08.30.>
- 2. 평균임금은 보수규정시행세칙상의 계산기준을 준용하며, 기본연봉, 직무연봉 및 성과연봉은 기본급, 직무급, 성과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2.05.08, 2011.06.21, 2022.08.30> 제6조(일급 및 시간급의 계산) 일급은 월 기본연봉을 30일로 나눈 것으로 하고, 시간급은 월 기본연봉을 209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한다.<개정 2009.12.30.. 2019.12.27>
- 제7조(법정수당) ① 연차휴가는 당해연도에 사용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보수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1.06.21>
  - ②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등 초과근무수당은 연봉에 포함되어 산정된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05.08>
- 제8조(연봉제의 운영) ① 기본연봉은 전년도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과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개정 2002.5.8, 2011.6.21>
  - 1. 기본연봉은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매년 개인별로 달리하며 별표 1-1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평가 인상률을 산정한다.<개정 2006.12.18,2011.06.21>
  - 2. 평가결과의 연봉적용은 전년도 개인평가 결과에 따라 산정된 순위에 의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1.06.21,2013.12.27>
  - 3. 평가인상률은 매년 1월 1일부로 적용하되, 전년도 평가결과가 산출되는 시점에서 소급하여 적용한다.
  - ② 직무연봉은 "별표 1-2"의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2.5.8, 2007.12.27,2011.6.21, 2017.12.28,2021.12.24.,2023.12.28.>
- 제9조(성과연봉의 지급률 결정) ① 성과연봉은 720% 한도로 구성한다.<개정 2002.05.08, 2002.12.24, 2003.12.11., 2006.12.18., 2007.12.27., 2011.06.21., 2016.10.27., 2017.12.28., 2023.12.28.>
  - ② 성과연봉의 운영기준은 "별표2"에 의하며,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1.06.21.,2016.05.26., 2021.12.24>
  - ③ 성과연봉 지급기준의 최하위 등급(E등급)은 성과평가 대상기간 중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 처분을 받거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21.12.24>
  - 1.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 유용, 채용비위
  - 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 범죄
  - 3.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 4.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 5.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 제10조(중도입사자의 연봉) 중도입사자의 기본연봉은 "별표3"의 직급별 기본연봉 상·하한액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개정 2002.05.08, 2002.12.24, 2004.12.09, 2005.12.28, 2006.12.18, 2007.12.27, 2008.12.29, 2009.12.30, 2011.06.21, 2011.12.28, 2012.12.31, 2015.12.18, 2016.12.21, 2017.12.28, 2018.12.20., 2019.12.27., 2020.12.24., 2022.12.29., 2023.12.28.>
- 제11조(승진자의 연봉조정) ① 상위직급으로 승진 시에는 동일직급 기본연봉 상·하한액의 범위내에서 "별표4"에 의한 승진 가급액을 발령일을 기준으로 기본연봉에 가산하여 연봉을 조정한다.<개정

- 2002.05.08, 2002.12.24, 2004.12.09, 2005.12.28, 2006.12.18, 2007.12.27, 2008.12.29, 2009.12.30, 2011.06.21, 2011.12.28, 2012.12.31, 2015.12.18, 2016.12.21, 2017.12.28, 2018.12.20., 2019.12.27., 2020.12.24., 2022.12.29., 2023.12.28.>
- ② 직원의 직위수행에 따른 기본연봉 조정은 별표 1-3의 기준에 따르며, 직무연봉은 수행직무의 등급을 적용한다.<신설 2011.06.21>
- 제12조(연봉의 지급방법) 기본연봉은 12등분하여 매월 균등 지급하며, 성과연봉은 평가결과 확정시 차등 지급한다. 다만, 필요시 성과연봉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으며 추후 평가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개정 2011.06.21.>
- 제12조의 2(연봉의 감액) 정직 및 강등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기간(강등의 경우 3개월) 동안 보수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21.12.24>
- 제13조(연봉의 적용기간) 연봉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단, 인사 및 직제 변경에 따라 연봉변경 필요시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4조(연봉계약) 연봉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아니하며, 연봉관련 모든 사항은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12.30>

#### 제 3 장 기타사항

- 제15조(보안유지 의무준수) 연봉제 적용 대상자의 연봉금액 등은 공사 및 당사자의 상호 동의가 없는 한 제3자에게 보안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정부기관의 요청, 공사의 필요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2.30>
- 제16조(퇴직금) ① 본 연봉제 도입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퇴직금 지급은 연봉제로 전환한 이후의 평균임금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 ②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및 퇴직금 지급률은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 ③ 평균임금 산정시 성과연봉은 보수규정시행세칙 제28조(평균임금의 계산)에 따른다. <신설 2011.06.21.. 개정 2016.10.27., 2020.12.24>
- 제16조의 2(퇴직연금) ① 공사는 직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1.12.28>
  - ② 퇴직연금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1.12.28>
- 제17조(연봉에 대한 이의신청) ① 연봉적용 당사자가 본인의 연봉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연봉조정 후 10일 이내에 소속관리자에게 이의신청한다.<개정 2011.06.21>
  - ② 이의신청을 접수한 소속관리자는 연봉산정 내용 및 근거를 검토하여 이의 신청사유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관리부서에 이의를 제기한다.<개정 2011.06.21>
  - ③ 관리부서는 연봉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봉산정 내용 및 근거를 검토하여 연봉을 확정하여 통보한다.<개정 2011.06.21>
- 제18조(기타사항)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보수의 계산 및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보수규정 및 시행 세칙을 준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 (경과조치)
  - 1. 규정 제8조 제2항의 직무연봉 적용에 있어 직무분석이 이루어 질 때까지는 최소 지급률을 적용한다.
  - 2. '99년도 업적연봉은 경영계약 체결 직원의 경우 '98년도 단체업적 평가결과를 적용하고 경영계약 미체결 직원은 '98년도 단체업적평가결과 및 '99년도 상반기 개인업적 평가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하여 지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평가인상률의 등급적용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02년도는 평균등급 B를 일괄 적용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기초연봉 조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 1. 이 규정 제11조 2항 및 2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2직급 통합 전 2직급 1등급이었던 직원이 1직급으로 승진 시 이 규정 제11조 1항에 의한 승진 가급액에서 기 반영된 승진가급액(1,942천원)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연봉에 가산한다. 단, 기 반영된 금액은 본 조항 개정시점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제8조 제1항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 및 제9조는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제10조 별표3과 제11조 별표4 및 제16조의 2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제9조 "별표2" 성과연봉 운영기준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제8조 "별표1-1" 기본연봉 산정기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1급직원의 경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2013년에 지급한 기본연봉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2016년 6월 28일 제정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성과연봉제규정 시행에 따라 폐지된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복원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사규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성과연봉제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9조(성과연봉의 지급률 결정)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8.23>

이 규정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12.21>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12.30>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0.12.24>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제16조(퇴직금) 제3항에 관한 사항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1.12.24>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 1. 제9조3항 최하등급 적용은 2021년을 평가 대상기간으로 하는 성과급부터 적용한다.
- 2. 제12조의 2는 시행일 이후 정직 및 강등 처분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22.08.30>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2.12.29>

제10조(중도입사자의 연봉) "별표3", 제11조(승진자의 연봉조정) "별표4"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개정 2023.12.28>

제10조(중도입사자의 연봉) "별표3", 제11조(승진자의 연봉조정) "별표4"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연봉제의 운영) "별표1-2", 제9조(성과연봉의 지급률 결정) 제1항 및 제2항 "별표2"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1】<개정 2011.6.21,2013.12.27>

## 기본연봉 산정기준

구 분	세 부 기 준					
산정시기	○ 전년도 평가결과 도출 및 기준인상률 확정시					
산정방법	○ 전년도 기본연봉 × { 1 + (기준인상률 + 평가인상률) } - 기준인상률 : 물가상승률과 경영여건을 감안한 Base-up - 평가인상률 : 전년도 개인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인상률 * 평가 결과가 없는 직원은 해당직급의 평균점수 적용					
	평가등급 S A B C D					
	배분비율 10% 20% 40% 20% 10%					
	평가인상률 2.0% 1.5% 1% 0.5% -					
지급방법	○ 산정된 기본연봉의 12분의 1을 매월 지급					

【별표 1-2】<개정 2011.06.21, 2017.12.28., 2018.08.22., 2021.12.24., 2022.08.30., 2023.12.28>

## 직무연봉 운영기준

구 분	세 부 기 준					
직무연 <del>봉</del>	지무등급 부서장급 부 장 급 * 직무평가결과 * * 다른 직급(직무 * 겸직자의 경우 * 무보직 및 정조 * 1~2급 직원이 3 - 1급 직원은 부 - 2급 직원은 부 - 부서별 정원 특	·등급)의 직무 겸직 직무중  처분자는 직 <sup>도</sup> 3급 이하의 직 -서장급 최하등 -장급 최하등	를 수행하는 7 상위직무 등급 구연봉 미지급 위에 보직된 7 등급의 30% 지급 급의 50% 지급	경우 수행직무 · 적용 경우 급	의 직무등급 7	
지급방법	○ 산정된 직무연봉의 12분의 1을 매월 지급 (직무변동시 1일자를 제외하고는 익월에 반영)					

【별표 1-3】<신설 2011.06.21, 개정 2016.05.26, 2018.08.22 >

# 직위보임에 따른 기본연봉 운영기준

구 분	세 부 기 준
1급 직원의 해당 직위의 단장, 본사 처(실)장 및 지사장 보임	본인 기본연봉 적용
2급 직원의 1급 직위의 본사 처(실)장 및 지사장 보임	1급 승진에 해당하는 기본연봉 적용
3급 직원의 1~2급 직위의 본사 처(실)장, 지사장, 2급 본사 및 지사 부장 보임	2급 승진에 해당하는 기본연봉 적용

- ※ 1. 정원 범위 내의 직위 보임의 경우만 적용(정원초과시 미적용)
  - 2. 직위 변경 시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적용(해당기간만 반영)

【별표 2】<신설 2011.06.21, 개정2012.12.31, 2016.05.26, 2016.10.27., 2017.12.28., 2021.12.24. 2023.12.28.>

# 성과연봉 운영기준

### ○ 구 성

	지 급 률					
기준급여	일반성과급	인센티브성과급				
	크인 8 작업	내부평가급	경영평가성과급			
월 기본연봉	연 220%	연 250%	연 0%~250%			

### ○ 운영기준

구 분	세 부 기 준					
기준지급률	○ 470% ~ 720%					
지급시기	○ 월 기본연봉의 220%를 선지급 후 평가결과 확정 시 정산         월 기본연봉의 220%       월 기본연봉의 250%~500%         2~11월(각 10%) 및 7월·설·추석(각 40%)에 지급       내부 경영평가 확정 시 지급					
지급기준	○ 경영평가에 따른 결과 반영         - 1, 2급 직원         평가등급 S A B C D E         배분비율 10% 20% 40% 20% 10%         지급률 a×1.60 a×1.05 a×0.95 a×0.86 a×0.80 0%         ※ 기준지급률(a) = 월 기본연봉의 470%~720%         - 단장 직위 직원         평가등급 S A B C D E         지급률 β×1.80 β×1.25 β×0.95 β×0.66 β×0.60 0%         ※ 기준지급률(β) = 월 기본연봉의 470%         ※ 경영평가성과급은 정부경영평가 지급률 적용(월 기본연봉 250% 한도)         - 내부성과평가 E등급 시 경영평가성과급 미지급					

【별표 3】<개정 2011.06.21,2011.12.28,2012.12.31,2013.12.27, 2014.12.23, 2015.12.18, 2016.12.21, 2017.12.28, 2018.12.20., 2019.12.27., 2020.12.24., 2022.12.29., 2023.12.28.>

### 직급별 기본연봉 상·하한액

구 분	기본연봉 상한액	기본연봉 하한액
1급	73,597,910원/연	63,028,570원/연
2급	66,583,070원/연	51,192,860원/연

【별표 4】<개정 2011.06.21,2011.12.28,2012.12.31,2013.12.27, 2014.12.23, 2015.12.18, 2016.12.21, 2017.12.28, 2018.08.22, 2018.12.20., 2019.12.27., 2020.12.24., 2022.12.29., 2023.12.28.>

### 직급별 승진 가급액

구 분	숭진 가급액
2급 → 1급	8,168,010원/연
3급 1 → 2급	5,557,400원/연
3급 2 → 2급	7,091,380원/연

【별표 5】연봉제 서약서 <삭제>

【별표 6】연봉제 계약서 <삭제>

【별표 7】연봉 통보서 <삭제>